법제처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2022. 12. 27.(화) 11:00	배포 일시	2022. 12. 27.(화) 11:00
담당 부서	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	책임자	과 장 배개나리 (044-200-6571)
		담당자	서기관 이연지 (044-200-6572)

소상공인 과태료 부담 낮추는 법령 개정안 12.30 시행

- 연내 대통령령 18개 일괄 정비, 내년까지 91개 법령 추가 개선 -

□ 법제처(처장 이완규)는 **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행정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18개 대통령령* 일괄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**됐다고 밝혔다.

* [붙임]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정비대상 시행령 목록

○ 이번에 일괄개정되는 **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18개 대통령령은 12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**된다.

□ 이번 개정은 **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'소상공인·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' 이행의 일환으로,**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**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50퍼센트에서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**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.

○ 법제처는 **지난 10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우선 정비가 가능한 18개 법령을 이번에 먼저 개정**했으며, 이를 포함해 **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109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**이다.

□ 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○ **(사례 1) 가축분뇨처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경제위기 등으로 시장 여건이 현저하게 바뀌었는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**할 수 있도록 했다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9).

○ **(사례 2)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제재처분**이 **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**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**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으로 감경**할 수 있도록 하고, **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퍼센트까지 행정처분을 감경**할 수 있도록 하는 감경기준을 신설했다(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).

□ 한편 행정처분 감경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**소상공인의 법령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**, ② **제재처분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위기로 관련 시장·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 한정해 제재처분을 감경**할 수 있도록 했다.

□ 이 처장은 "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,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소상공인 여러분의 영업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**한다"라면서 "**앞으로도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잘 살피고 꾸준히 개선**해 나가겠다"라고 밝혔다.

붙 임 **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정비대상 시행령 목록**

연번	소관부처	정비대상 법령	조문	정비 내용
1	환경부	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	별표 9	·과태료 감경사유에 소상공인 추가
2		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	별표 4	
3		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	별표 7	
4		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	별표 15	
5		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	별표 2	
6		물환경보전법 시행령	별표 18	
7		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	별표 2	
8		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	별표 3의3	·영업정지처분 감경사유에 소상공인 추가
			별표 5	·과태료 감경사유에 소상공인 추가
9		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령	별표 2	·과태료 감경사유에 소상공인 추가
10		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	별표	
11		악취방지법 시행령	별표 2	
12		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	별표 2	
13		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	별표	
14		자연공원법 시행령	별표 3	·과태료의 감경사유에 소상공인 추가 (영업행위에 대한 위반으로 한정)
15		하수도법 시행령	별표 3	·과징금 감경사유에 소상공인 추가
			별표 8	·과태료 감경사유에 소상공인 추가
16	국토교통부	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	별표 1의2	·지정취소처분의 감경규정 신설 ·소상공인의 제재처분 최대 감경범위를 70퍼센트까지 확대
17	농림축산식품부	비료관리법 시행령	별표 3	·과징금 감경사유에 소상공인 추가
18	산림청	산림보호법 시행령	별표 1의7	·등록취소처분의 감경규정 신설 ·소상공인 영업정지처분의 최대 감경범위를 70퍼센트까지 확대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